

대전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124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11246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소219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선준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영

변론 종결2022. 6. 15.

판결 선고2022. 7. 20.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소219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와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019. 12. 22. 08:45경 대전 서구 C앞 도로에서 원고측 차량과 피고측 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는 우측 도면과 같다(도면에 표시된 #1차량이 원고측 차량이고, #2차량이 피고측 차량이다).

DIAGRAM: 교통사고 발생 경위 도면(이미지 생략)

○ D심의위원회는 2020. 7. 6.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측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8,24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2020. 7. 13. 피고에게 8,120,000원을 지급하였다.1) [인정근거] 갑1~6호증, 을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측 차량 운전자는 3차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구상금 812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2,436,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가 과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측 차량의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피고측 차량의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점(을 5호증 블랙박스 영상에서 원고측 차량의 방향지시등이 아니라 제동등이 점등된 사실이 확인된다)을 고려할 때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원고측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선용

판사최리지

판사강병하

1) 피고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5조 제2항은 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D심의위원회가 결정한 824만 원이 아니라 812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 소제기의 적법요건을 정하는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한다.